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299 회 임시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3. 9.

이영빈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이영빈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
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
와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
명 · 안전 ·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
정하고자 합니다.

□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4조에는 협력체계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해, 안 제6조에는 산
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해, 안 제7조에는 달서구 안전보건지
킴이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8조에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해, 안 제9조에는
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
있도록 하였으며,

-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-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-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

【이영빈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3099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9. 1.

발의자 : 이영빈, 이선주, 김장관,
이진환, 정순옥, 박종길,
박정환, 박왕규

1.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
와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
· 안전 ·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규정 (안 제4조)
- 다.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
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한 규정 (안 제7조)
- 마.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과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규정 (안
제8조 ~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제정조례안 : 붙임 1
- 나. 관계법령 : 붙임 2
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
- 다. 비용추계 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·안전·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노동자”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,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협력체계 구성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, 대구지방고용노동청, 산업안전보건공단,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, 사업주단체,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5조(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)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등을 기초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
2.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·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
3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·업종별 대책
4.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
5.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
6.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·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
7.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
8.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)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
2.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·연구
3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
4.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
5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
6.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

7.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
8.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)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·조사·개선·지도·건의 등을 수행하는 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.
1. 산업안전보건지도사,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
 2. 기업체,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·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
 3.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
-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1.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
 2.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
 3.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
 4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
-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)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

2.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)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

2.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
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불임2

관계법령

□ 산업안전보건법

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